

대위에 의한 담보취소신청

신청인 ○○○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○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○)

전화 •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신 청 취 지

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귀원 20〇〇카기〇〇호 강제집행정지신청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이 20〇〇. 〇〇. 〇〇. 귀원 공탁공무원에게 20〇〇년 금 제〇〇호로 공탁한 금 〇〇만원의 담보는 담보권자의 동의가 있으므로 이를 취소한다.라는 재판을 구합니다.

신 청 이 유

- 1. 대위신청인 겸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상대로 ○○지방법원 20○○가단○○호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금 ○○○원을 지급하라는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았는데, 신청인은 ○○지방법원에 항소를 제기하며 강제집행정지신청(귀원 20○○카기○○○호)을 하고,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보증공탁으로 금 ○○○원을 귀원 공탁공무원에게 20○○년 금 제○○호로 공탁하고 항소심 판결선고시까지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.
- 2. 신청인의 항소심사건(20〇〇나〇〇〇호)은 〇〇지방법원에서 20〇〇. 〇. 〇〇. 신청인 항소기각 판결로 제1심 판결 주문과 동일하게 선고되고 신청인이 상고

기간 내에 상고하지 않아 위 사건은 확정되었습니다.

- 3. 한편, 대위신청인은 위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청인이 위 보증공탁금 $20^{\frac{1}{2}}$ 급 제○○호에 대하여 가지는 회수청구권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(20°) 타채○○호)하여 전액 압류 및 전부 받아 위 권리를 대위신청인이 승계 하였습니다.
- 4. 따라서 대위신청인은 신청인을 대위하여 이 사건 담보취소를 신청하고, 대위신 청인은 담보권리자인 피신청인이므로 스스로 담보취소에 동의하고, 그 동의서 와 즉시항고권포기서를 첨부하여 대위로 이 사건 신청합니다.

첨 부 서 류

1.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결정1통1. 담보취소동의서1통1. 즉시항고권포기서1통1. 송달료납부서1통

2000. 0. 0.

위 대위신청인(전부채권자)겸 피신청인 < (날인)

제출법원	집 행 법 원		
제출부수	신청서 1부	관 런 법 규	민사소송법 제125조 제2항
불복절차 및 기간	·즉시항고(민사소송법 제125조 제4항) ·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(민사소송법 제444조)		
비 용	·인지액: ○○○원(☞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) ·송달료: ○○○원(☞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)		
기 타	·이 사건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결정은 원심의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존속하는 것임이 그 결정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원심이 본안판결을 선고한 1982. 4. 29. 그 정지명령의 효력은 소멸되었다 할 것인즉, 그 후에 채권자가 위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채무명의(집행권원)에 의하여 재항고인의 공탁금반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얻고 이 사건 담보 취소신청을 함에 이른 것으로서 이는 위 압류전부명령에 의하여 공탁금반환청구권을 취득한 채권자가 담보제공자인 재항고인을 대위하여 담보취소신청을 하는 것이므로 그 신청을 인용한 원심결정은 타당함(대법원 1982. 9. 23.자 82마556 결정).		

●●●분류표시 : 민사집행 >> 가압류, 가처분